

『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
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고유목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
신설하여 세제를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(현행 제3조 삭제)
-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
에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상 근거법령
수정(안 제6조)
-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, 연구소기업, 외국인투자기업
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
산세 감면조항 신설(안 제9조의2)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불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불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부칙으로 종전감면 내용을 유지하며,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기업·기관에 대한 부동산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, 구미시가 2020년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됨에 따라 금오공대 등 강소특구지역 내 첨단기술기업, 연구소기업, 외국인투자기업,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통해 활발한 기술개발, 기술연계, 인재발굴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